

## 장성군의회 공고 제2018-12호

### 장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

「장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장성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8년 10월 12일

### 장 성 군 의 회 의 장

1. 조례명 : 장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

#### 2. 제안이유

-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국내 출장 시 운임 및 숙박비 지급 방법을 실비로 변경하고자 함.

#### 3. 주요내용

- 별표 1 내용 변경  
(현행)

철도 운임	선박 운임	항공 운임	자동차 운임	현지 교통비 (1일당)	숙박비 (1일당)	식비 (1일당)
1등급	2등 정액	정액	정액	20,000	실비 (상한액 : 서울특별시 70,000, 광역시 60,000, 그 밖의 지역 은 50,000)	25,000

(개선)

철도 운임	선박 운임	항공 운임	자동차 운임	현지 교통비 (1일당)	숙박비 (1일당)	식비 (1일당)
실비 (특실)	실비 (2등급)	실비	실비	20,000	실비 (상한액 : 서울특별시 70,000, 광역시 60,000, 그 밖의 지역 은 50,000)	25,000

#### 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공무원 여비 규정(일부개정 2015. 1. 6.)

#### 5. 공고기간

○ 공고기간 : 2018. 10. 12. ~ 2018. 10. 16.(5일간)

○ 공고장소 :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(공지사항)

#### 6. 조례안(별표 1) : 붙임

#### 7. 의견 제출

○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6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(참조 의회사무과장)에게 방문,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○ 성명, 주소, 연락처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

○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

- 받는 사람 : 장성군의회(참조 의회사무과장)

- 전화 061)390-7504, 팩스 061)390-7595

[별표 1]

국내여비 지급 기준표(제5조 관련)

(단위 : 원)

철도 운임	선박 운임	항공 운임	자동차 운임	현지 교통비 (1일당)	숙박비 (1일당)	식비 (1일당)
실비 (특실)	실비 (2등급)	실비	실비	20,000	실비 (상한액 : 서울특별시 70,000, 광역시 60,000, 그 밖의 지역 은 50,000)	25,000

비고

1. 장성군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,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.
2. 해당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.
3. 「공무원여비규정」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4.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.